

9.17(금)일 '조건'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 도 자 료

▶ 2004. 9. 15 배포

▶ 총 4 쪽

▶ 평등정책과 김광석 사무관

T E L : 02)507-4083

E-MAIL : diakim@molab.go.kr

F A X : 02) 502-5442
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·확인점검 실시

-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예방교육 미실시 많아
- 2회 이상 예방교육 미실시 15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

- 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매년 직장내 성희롱 자율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는바,
- 올해는 4.12~6.25간 상시근로자 20~29인 규모의 제조업 5,842개소가 자율점검을 한 결과, 대상업체의 28.4%(1,660개소)가 '03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매년 소규모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규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〈 자율점검 결과 비교 〉

(단위: 개소, %)

연도	점 검 대 상	점검 업체수	위반 업체수	위반율	조치사항	
					시정	과태료
2002년	30~49인 제조업	5,776	438	7.6	434	4
2003년	30~49인 비제조업	5,868	751	12.8	751	-
2004년	20~29인 제조업	5,842	1,660	28.4	1,531	-

※ '04년 위반사업체중 125개 사업장은 시정중임

- 예방교육 미 실시 사업장 1,660개소중 1,656개소(99.8%)가 지방노동관서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, 그 중 1,531개 사업장이 시정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시정 중에 있다.

【 자율점검 방법 】

- ▲ 점검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의 『자율점검실시안내』에 따라 노사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율점검 실시
- ▲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으로부터 점검실적을 보고받은 후 법 위반사업장의 개선계획을 심사하고 행정지도
- ▲ 법 위반사업장은 개선계획서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실적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

- 한편 자율점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년도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중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

- 올해의 경우 '03년 자율점검을 실시한 30~49인 비제조업 사업장 360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한 결과 168개소 (46.7%)가 교육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, 일부 근로자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등 예방교육이 부실하거나(89개소)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 실시(114개소)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금번 확인점검 결과 예방교육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규모의 제조업 점검결과 위반율 12.4%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
 - 지난해에는 제조업에 한정되었으나, 금년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하였고,
 - 과거 확인점검시 주로 그 전년도 자율점검실시의 적정성 여부를 보았지만 올해의 경우 자율점검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('03년) 예방교육 실시여부도 중점 점검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.

※ 위반업체중 '03년 자율점검 관련 규정 미준수 사업장은 46개소 (27.4%)이며, 나머지 122개소는 '03년 예방교육관련 위반업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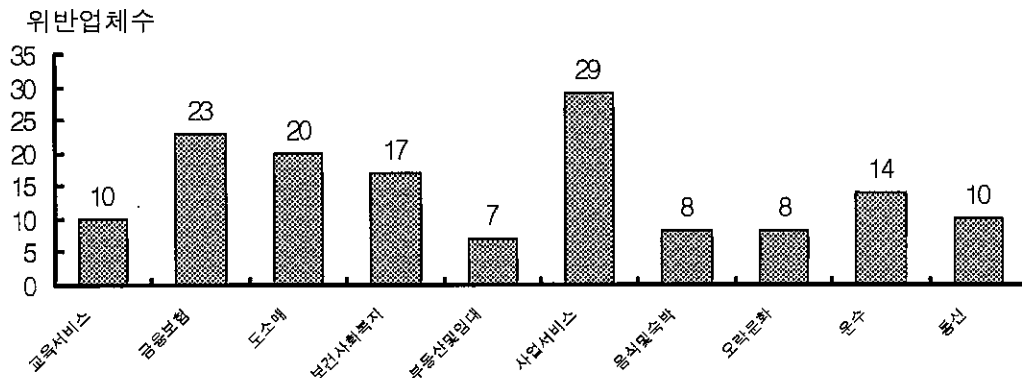
〈 확인점검 결과 비교 〉

(단위: 개소, %)

연도	점 검 대 상	점검 업체수	위반 업체수	위반율	조치사항	
					시정	과태료
2003년	30~49인 제조업	355	44	12.4	36	8
2004년	30~49인 비제조업	360	168	46.7	150	15

※ '04년 위반사업체중 3개 사업장은 시정중임

- 확인점검 결과 위반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, 사업서비스 29개소(17.3%), 금융보험 23개소(13.7%), 도·소매 20개소(11.9%), 보건·사회복지 17개소(10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- 위반업체 중 예방교육 1회 미 실시 등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153개소는 시정조치하고, 2회 이상 예방교육을 미 실시한 1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.

□ 금번 점검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

-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하고,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희롱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.

※ 관련규정(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) :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